

주간농업·농촌동향 국가 R&D 투자 협력(농식품부, 교과부)

※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도된 「농식품부, 교과부와의 MOU 체결로 국가 R&D 투자 협력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2010.06.28 미래정책연구소

□ 추진 목적

- 교과부의 기초·원천 연구성과와 농식품부의 산업화 연구를 연계하여 국가 R&D 효율성 제고 및 농식품 산업화 촉진
- 미래 바이오산업 부가가치 창출의 주체를 농업(green)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생명자원·인력 인프라를 농업분야에 활용

□ 주요 내용

○ 연구성과 기초·원천 R&D 성과 연계

- 교과부에서 지원한 농업분야 프론티어 사업단의 기초·원천 R&D 성과를 농식품부와 연계·공유
 - (대상) 자생식물이용('10. 3월 완료), 작물유전체기능연구('11. 3월 완료), 미생물 유전체활용('12. 3월 완료) 3개 연구사업단 등
- '기초기술연구회' 소속 출연기관 중 농식품 관련 연구수행 중이거나 협력의사가 있는 기관과의 신규 사업 기획 추진
 - 전문관리기관인 농기평(iPET)과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간 성과 공유 및 기획 추진('10. 6월~)

○ 교과부 인프라의 연계·공유

-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으로 구축된 **인간유전자은행, 식물추출물은행, 미생물소재은행**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 사업 기획
- 기 구축된 인프라의 연계·공유를 통해 교과부 기초·원천 연구성과 정보 및 생명자원의 교류 활성화 추진

○ 농식품부 '11년 신규사업 기획 시 교과부 인력의 적극 참여

- 생명연, 한의연, 대학 등의 우수 연구인력을 '11년 농림수산식품 R&D 사전기획 시 적극 활용하여 중복 투자 방지(공동기획 추진 등)
- 농기평에서 운영할 계획인 '(가칭)신규기획위원회'에 위원으로 참여

○ MOU체결과 함께 '10년 구체적 R&D 사업 추진협약도 병행

- 신규사업 추진('10. 6월)을 위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(이하 생명연)과 사업 기획 등을 위한 협약
-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1년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년 지원
- '10년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(R&BD) 총예산 80억 원 중 신규 20억 원 이내 규모로 기획하여 추진

<생명연과의 사업 기획 내용(예시)>

- 미생물을 활용한 맞춤형 고기능 성장소재개발
 - 곤충유래 미생물 기능성 소재개발(사료효율 향상 등)
 - 유전체 정보기반 고효능 맞춤형 미생물제개발(비료, 성장소재)
- 자생식물을 활용한 동식물질병치료제 개발
 - 인삼 뿌리썩음증 방제제 (천연살균제)
 - 식물-유래항원을 활용한 동물백신의 실용화(감자이용)

○ 향후 생명 및 식품산업 등 성장동력확보 R&D 적극 확대 추진

- 농식품부 R&D 사업에서 '기초연구 후속지원사업'(농림기술개발 사업 등)을 신규로 추진
- '12년도에 Frontier 후속사업(이어달리기) 프로젝트, 종자강국(Golden seed) 프로젝트 등을 예타 후보 사업으로 신청

주간농업·농촌동향 **농약관리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**

※ 6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된 「농약관리법 하위 규정 개정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□ 개정안 주요 내용

< 주요 내용 >

- ① 농약처리 봉지 등도 '농약활용기자재'로 등록하여 품질관리 강화
- ② 농약활용기자재의 구매자 정보 기록
 - 맹독성 또는 고독성 농약 구매시 구매자 이름·주소·품목·수량 등 기록
- ③ 농약 수입업자의 등록기준 완화
 -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

□ 시행령 개정 사항

- 농약활용 기자재 등록, 시험, 직권취소,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(안 제4·5·6·8조, 제8조의2, 제11·12·22조)
 - 농약활용기자재를 검사할 수 있는 시험연구기관 지정 규정 개정
 -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을 농진청장이 고시
- 농약,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신청 시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되는 기간 단축(안 제6조제1항제2호, 제9조제1·2호)
 - 최초 품목등록 후 경과기간을 15에서 10년으로 단축
-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을 그 준수 대상자에 맞도록 개선(안 제19조, 제20조)
 - 종전 취급제한기준(제20조)에 포함된 사용대상자 및 사용지역 제한

규정을 안전사용기준(제19조)으로 조정

- 안전사용교육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9조의2 신설)
 - 농촌진흥청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교육을 실시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약사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.
- 농약 구매자 정보를 기록해야할 대상 농약의 범위 신설(제21조 신설)
 - 맹독성 또는 고독성 농약, 그 밖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약은 구매자 정보 기록을 의무화함.
 - 현행 : 농진청고시로 고독성·어독성 1급, 기타 그라목손 등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.

□ 시행규칙 개정 사항

- 농약 제조업등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 세부 등록기준 개정(안 6조 관련 별표1)
 - 제조업·판매업 등 등록기준에 농약활용기자재 관련 규정 포함.
 - 수입업 등록 보관창고 기준 완화(165㎡→자율)
- 신청 및 발급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10·12·18·20·22조의2·31조)
 - 농약 품목등록 신청, 발급, 수수료 납부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
- 영업의 취소·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 위임 법규에 맞도록 정비(안 제11조관련 별표2)
 - 행정처분기준 중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“당해품목등록취소”를 “해당품목 제조·수입 및 판매정지 1년 등”으로 개정
- 농약 구매자 정보 등 장부기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신설(안 제24조의2 신설)
 - 제조·수입·판매업자가 농약판매 시 기록해야 할 구매자 이름·주소·품목·수량 등 장부기재 사항 규정